

韓國建築設計競技規準

韓國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會

第1條(目的)

本規準은 建築物이나 建築과 類似한 構造物의 設計를 公開 또는 指名競技 設計로 하고자 할 때 建築主, 応募者, 協力機關 및 審查委員의 責任, 權利, 任務 및 義務를 規定하여 建築主와 応募者間의 関係를公正히 하고, 競技秩序를 確立하여 建築藝術文化의 發展과 著作權의 尊嚴性을 높이는데 그 目的이 있다.

第2條(用語定義)

本規定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① 이 規準에서 公開設計競技라 함은 建築主가 參加資格을 特定人의 制限 없이 懸賞応募케 하는 行爲를 말한다.
- ② 이 規準에서 指名設計競技라 함은 建築主가 參加資格을 特定한 法人, 自然人에게 局限시켜 施行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이 規準에서 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회라 함은 大韓建築学会, 韓國建築家協會 및 大韓建築士協會에서 選出된 設計競技運用機構를 말한다.

第3條(適用範圍)

- ① 国家機關의 建物中 特殊建物 或은 国家와 民族의 象徵的 建物은 設計競技를 行하여야 한다.
- ② 個人이나 団體의 建物이라도 1項에 類似한 建物은 設計競技를 行하여야 한다.
- ③ 1.2項 以外의 建物이라도 設計競技를 行하여야 한다고 公認되는 建物은 設計競技를 行하여야 한다.

第4條(運用 및 機關)

- ① 本規準은 前記한 設計競技가 發生하였을 경우 適用한다.
- ② 本規準은 韓國 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회가 運用한다.

第5條(當選者와 實施者)

- 建築主는 設計競技의 最高得點者(1等當選者)를 本設計 및 工事監理의 担當者로 指名하여야 한다.
- ① 設計競技의 当選者が 建築士法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建築士事務所의 開設登録을 한 建築士일 경우 建築主는 当選者를 本設計 및 工事監理者로 指名하여야 한다.
 - ② 当選者が 建築士法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事務所의 開設登録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事務所開設登録을 할 수 없는 처지일 경우 当選者は 建築物의 本設計 및 工事監理의 業務를 建築士法 第25條의 規定에 依拠 事務所開設登録을 한 建築士를 選定하여 協同設計한다. 但, 著作權은 当選者에게 歸屬된다.

第6條(建築主)

- ① 建築主는 設計競技에 回付코자 하는 建築物의 確固不動한 計劃을 세워야 한다.
- ② 建築主는 競技計劃의 第1次 段階로 競技에 関한 모든 技術 및 行政的 諮問機構를 設定할 수 있다.
- ③ 技術 및 行政諮詢을 委嘱받은 建築家는 競技를 完全無缺하게 하기 위하여 競技計劃書, (本規準에 付合되는 것으로 三團體 運用委員회의 承認을 獲得) 競技運營, 建築主에의 諮問, 審查, 進行, 協助等의 任務와 責任을 진다. 그러나 審查에 參加하거나 意見을 陳述할 수 없다. 以下 本條의 諮問委嘱을 받은 建築家를 技術顧問이라 称한다.
- ④ 建築主는 必히 審查委員으로 하여금 当選作을 選定케 하여야 한다. 当選作該當이 없을 時는 最高得點者에게 当選者와 同一한 權利를 賦与하여야 한다.
- ⑤ 建築主는 応募者와 審查委員에게 同一한 内容의 事實만을 알려 주어야 한다.
- ⑥ 公告, 登錄, 現場說明 및 作品接受는 韓國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회 規準에 一致되어야 한다.
- ⑦ 当選作 以外의 優秀作品을 若干 選定 할 수 있으며 建築主는 応分의 製作費를 支払하여야 한다.
- ⑧ 建築主는 落選者에게 応分의 製作費를 支費할 수 있다.

第7條(參加制限)

建築主 및 競技計劃에 関係한 者는 競技에 參加하거나 応募者에게 協力할 수 없다.

第8條(手數料 및 報酬)

設計 및 工事監理擔當에 對하여는 大韓建築士協會의 「建築設計料率基準」에 따라 報酬를 支払한다. 指名競技參加者の 參加報酬는 1人당 当該設計報酬의 5% 以上, 公募의 경우는 当選者 또는 最高得點者에게 支払되는 手數料總額을 設計費의 경우 以上으로 한다. 前記한 報酬나 手數料는 實施設計 및 工事 監理報酬와는 無關하다.

또한 建築主는 審查決定 發表後 一定한 期間內에 建築이 實施되지 않는 境遇에 当選者 또는 最高得點者에게 応分의 報償金을 支払해야 한다.

第9條(顧問 및 審查報酬)

技術顧問의 報酬는 勿論 要求된 일에 比例하나 技術顧問은 全的으로 賴은 時間을 이에 專心하므로 充分한 報酬가 주어져야 한다. 勿論 公的인 費用은 이에 包含되

지 않고 別途支払된다.

審査委員의 報酬는 旅費等 公的인 費用外에 1人당 設計費의 1%以上으로 한다.

外国人의 境遇도 實情에 맞는 報酬 및 公的인 費用을 支払하여야 한다.

第10條(審査費用)

審査에 要하는 諸費用은 建築主의 負担으로 한다.

第11條(審査委員会)

① 審査委員회는 3名以上으로 構成하며 그 3分之 2以上은 設計 및 工事監理의 經驗이 豊富한 一級建築士로서 고매한 人格의 所有者로 한다.

但, 外國의 著名한 建築家도 招聘할 수 있다.

② 審査委員회는 一名의 委員長을 選出하며 委員會의 運營을 주관한다.

第12條(審査委員에 대한 制限)

審査委員 및 審査委員과 特定한 関係가 있는 者는 審査의 公正을 害할 憂慮가 있으므로 応募하거나 応募者를 援助或은 当該 建築物의 設計 및 工事監理에도 関与할 수 없다.

第13條(審査方法)

審査委員은 本規準에 一致하는 自体 審査規準을 作成하여 進行할 수 있다.

第14條(審査報告 및 発表)

審査委員회에서 決定된 事項의 報告는 委員長이 建築主에게 通告함과 同時 委員長名義로 当選案의 決定을 公表한다.

審査에 関係된 모든 責任은 審査委員회가 지며 이에 따르는 諸費用은 建築主가 負担한다.

第15條(設計競技応募要領)

設計競技応募要領은 韓國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회의 内規에 따른다.

第16條(応募者の登録)

公募나 指名競技의 境遇応募는 競技 主催者에게 登録하고 設計競技応募要領書를 交付받아야 한다.

第17條(質疑応答)

応募者は 設計競技要領書나 応募事項에 疑問점이 있으면 技術顧問에게 書面으로 問疑할 수 있으며 이를 檢討하여妥当性을 認定하면 이를 即時 全応募者에게 公平히 伝達하는 同時に 応募要領의 一部로 한다.

第18條(著作権)

応募設計図書의 著作権은 該案提出 応募者에게 归屬한다.

但, 1等 当選案은 当該 建築物에 限하여 1回限 関係된 使用権을 主催者에게 归屬한다.

第19條(応募案의 禁止事項)

応募案에는 姓名, 暗号等 어떤 種類의 標識도 할 수 없다.

第20條(応募案의 失格)

応募案中 審査委員회가 定한 内規에 어긋나는 案을 失格시킬 수 있다.

第21條(応募案의 公開展示)

参加된 모든 応募案은 審査結果를 公表하기 위하여 審査報告書와 同時に 一定期間一般에게 公開展示한다.

그러나 案이 많을 때는 그 数를 制限할 수 있다.

第22條(作品返還)

当選案을 除外한 모든 応募案은 公開展示後 二週日以内에 建築主 負担으로 応募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韓國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会規定 및 内規

第1條(目的) 本規定은 建築設計競技規準을 施行함에 있어 委員会의 業務, 責任, 権利를 規定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第1部 委員会 規定

第2條(位置) 韓國 設計競技運用委員회(以下 本委員회라 칭한다.)는 서울 特別市 鍾路区 世宗路81~6番地에 둔다.

第3條(構成) 本委員회는 大韓建築学会, 韓國建築家協會, 大韓建築土協会에서 若干名의 選出된 人士로 構成하며 互選에 依하여 1名의 委員長을 둔다.

第4條(任期) 本委員회의 任員 및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나 重任할 수 있다.

第5條(會議) ① 定期會議는 月 1回를 원칙으로 하며 必要時에는 委員長이 召集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으로 의결 된다.

②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시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③ 本 内規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第6條(財政) 本委員회의 財政은 三團體의 贈出金과 其他의 資助金으로 한다.

第7條(権利) 本委員회는 다음의 権利를 갖는다.

① 建築家 個人에게 被害가 없는 한 本委員회가 設計競技에 回附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時는 建築主에게 回附를 要請할 수 있다.

② 建築主가 規準에 違背되는 行為를 할 때 建築主에게 시정을 要請할 수 있으며 이에 不応할 時에는 그 내용을 公開하여 応募參加를 不応케 할 수도 있다.

③ 全応募者の 応募不応을 三團體에 要請하여 議決되었음에도 不拘하고 応募할 時에는 그 応募者를 該當協會에懲戒를 要請할 수 있다.

第8條(義務) 本委員회에는 다음과 같은 義務가 있다.

- ① 本委員会는 建築主로 부터 技術顧問, 審查委員의 推薦을 의뢰 받으면 추천을 할 수 있다.
- ② 本委員会는 応募者나 建築主의 一切의 質問에 応할義務가 있으며 答辯內容을 全応募者에게 公知시킬義務가 있다.

第2部 委員会 内規

- 第9條(公告)** ① 設計競技의 公告는 広範囲하게 하여 많은 応募者가 認知 토록 하여야 한다.
 ② 設計競技 公告時에는 規準에 의거하여 懸賞金을 明示하여야 한다.
 ③ 設計競技公告時에는 事理에 맞는 充分한 作品제작기간을 設定 明示하여야 한다.
 ④ 設計競技公告時 著作権의 侵害나 著作者 人格에 損傷되는 用語를 掲載할 수 없다.
 ⑤ 本 規準에 위배되는 參加制限은 公告할 수 없다.

第10條(賞金)

- ① 規準 第8条에 依하여 支払되는 賞金은 当選作 發表後 1個月 以内에 支払하여야 한다.
- ② 公告時에 策定된 金額은 如何한 경우가 있더라도 減少될 수는 없다.

- 第11條(建築主)** ① 建築主는 応募要領書를 作成 応募者에게 配付하여야 한다.
 ② 建築主는 公告文이나 施行要領書中 建築設計競技 運用委員會로 부터 不當性을 指摘받고 修正 要請이 있을 때에는 이에 応해야 한다.
 ③ 建築主는 当選者の 同意없이 当選案에 部分的인 變造案을 作成 製作케 할 수 없다.
 ④ 当選案이 建築主 事情에 依해 建築이 실시 안될 시라도 当選案을 다른 用途의 建築에 使用할 수는 없다.

- 第12條(審查委員會)** ① 規準 第11條의 審查委員會는 建築主의 要請期間만 存立 한다.
 ② 建築主는 嚴正한 審查를 위한 審查委員會의 如何한 要請에도 応해야 한다.

- 第13條(技術顧問)** ① 建築主로 부터 委嘱받은 技術職担当役은 設計競技規準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技術顧問 및 技術職担当役은 審查委員을 겸임할 수 없다.

- 第14條(審查委員)** 審查委員會 構成發表는 公告와 同時に 하거나 審查以前에 하여야 한다.

- 第15條(落選作返還)** 一切의 落選作은 2週日 以内에 返還하여야 하며 破損時는 補償을 하여야 한다.

附 則

1. 本 規定에 결여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회 釜山美術展覽會에 따른 建築作品応募要綱

光復 30週年을 맞아 藝術創造意慾과 民族情緒의 一大躍進의 발판이 될 第一回 釜山美術展覽會開催에 따라 釜山地域發展의 기틀을 마련 코자 많은 建築人의 參與를 期待하며 아래와 같이 建築作品을 公募합니다.

1. 対 象

釜山市立圖書館

2. 建築計劃 및 作品規模

가. 立地條件: 綠地地区(詳細한 것은 釜山市教育委員會 施設課에 備置閱覽에 供함)

나. 建物層數 및 規模: 地下一層 地上三層 延面積 3,000坪程度(視聽覺室을 兼한 大講堂 150坪程度 包含)

다. 収容人員: 3,000名 程度

라. 藏書: 600,000卷 程度

마. 圖面規格: 120cm×240cm 内外

바: 圖面種類

① 說明 및 配置圖: 縮尺 1/100~1/300

② 平面圖 및 立面圖: 縮尺 1/100~1/200

③ 主斷面圖: 縮尺 1/100~1/200

④ 透視圖 혹은 模型

3. 參加資格: 大韓民國 居住者로서 國内外人

4. 出品節次

가. 願書配付: 1975年 10月 10日 부터

나. 接受: 1975年 10月 20日~10月23日 午後 5時까지

다. 接受處: 芸總釜山支部(釜山市民會館 3層 (6) 3425)

라. 審查 및 發表: 1975年 10月 27日

마. 願書配付處: 芸總釜山支部 (6) 3425 및

建築家協會釜山支部 (22)-1921
8641

바. 出品料: 1点当 1,000원

5. 施 賞

金賞: 1名 賞狀 및 奖牌 600,000원

銀賞: 1名 賞狀 및 奖牌 60,000원

銅賞: 1名 賞狀 및 奖牌 20,000원

特選 및 入選: 若干名 賞狀 및 奖牌

6. 特典

金賞作品에 對해서는 本設計資格을 賦與할 수 있다.

7. 參考事項

가. 展示期間: 1975年 11月 3日~11月22日(20日間)

나. 作品搬出

① 展示作品은 展示終了後 10日内

② 落選作品은 審查終了後 10日内

但 同期間內에 찾아가지 않는 作品에 對해서는 紛失

또는 破損等의 責任을 一切 지지 아니함.